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258~60 / 전송 731-6956
 세무행정과 과장 위정복 담당사무관 김용배 담당자 임정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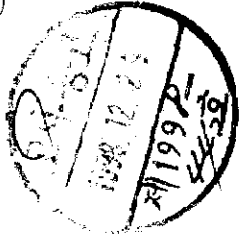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새정 13430-1327

시행일자 1998. 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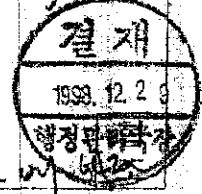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	시	장
보존	년			
국	장	권	김용배	
과	장	장		
기안	인	장	평가담당사무관 김용배	



제목 '99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1. 량처부 새정 13430-532('98.12.5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'99년도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임목·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별첨과 같이 결정 시도에 고시하고,

3. "제3안"과 같이 시달하고자 합니다.

- 첨부 1. 고시(안) 1부
 2. '99기타물건 시가표준액 1부
 3. 지방세과세로준분과위원회 심의·의결결과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'0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시달

1.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임목·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

인의표준액

2. '99.1.1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.

첨부 '99기타물건 시가표준액(별도배부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수신처 서구 1~25, 세무운영과장, 전산정보관리소장(전산처리과장)

(제 3 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'9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의력

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결정한 '99년도 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임목·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시보에 고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고시문 1부 끝.

세무행정과장



원본대조필

고 시(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-~~144~~호

고시번호	1998-144	제 101 호
담당	서552	사무담당관
성명	서도리	서도리

199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기타물건(차량·기계장비·항공기·입목·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)의 1999년도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98.12.

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 :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

2. 시행일자 : '99.1.1

3. 결정항목 :

가. 차 량

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시가표준액표 ④ 과표적용요령 ⑤ 산출예시

나. 기계장비

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건설기계(기계장비)연도별 잔가율표

다. 항공기

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항공기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표 ④ 시가표준액 ⑤ 과표적용요령 ⑥ 산출예시

라. 입 목

① 용어의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시가표준액 적용
바.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
의 용어정의 ⑥ 용어해설 ⑦ 종류 ④ 시가표준액

4. 세부결정사항

138

서울특별시 세무행정과에 비치하고 있는 물건별 시가표준액과 같음

인본대조필